

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470
----------	------

2021년 6월 23일
운 영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. 5. 28. 한기영 의원(권수정 의원 등 23명 찬성)

나. 회부일자 : 2021. 6. 1.

다. 상정 일자 : 제301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

- 2021년 6월 23일 상정·의결(수정 가결)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의회의 열린의정을 구현하고 서울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.
-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의 역할 및 구성을 정함(안 제3조).
- 활동지원, 실비보상, 포상, 위촉 해제 등 의정모니터 관련 사항을 규정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해당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

다. 기 타 : 해당 없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선희)

1 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제정안은 그동안 의장 방침에 의해 운영해오던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사업에 대하여 조례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되었음.

2 의정모니터 운영 사업의 개요

- 의정모니터 운영 사업은 시민여론 수렴 및 시책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'99. 10월 최초 도입된 이후, 현재까지 의장방침에 의거해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사업 운영 실적은 다음과 같음.¹⁾

<표 1> 최근 5년간 의정모니터 운영 사업 추진실적

연도	2017	2018	2019	2020	2021.6월
운영횟수(회)	12	10	12	12	5
의견제출(건)	669	653	839	966	598
소요예산(천원)	40,720	40,720	40,720	38,400	82,980

- 이에 본 제정안은 의정모니터 운영 사업에 관한 조례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으로 제정 목적과 취지가 타당함.²⁾

1) 세부내역은 별첨 참조

2) 본 제정안과 같은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, 세종특별자치시의회, 경기도의회, 충청남도의회 등 4개 광역의회가 보유하고 있음.

3 의정모니터에 관한 용어 정의 및 구성 등(안 제2조부터 제4조)

- 안 제2조는 의정모니터에 대해 ‘서울특별시(이하 “서울시”)에 주소를 둔 시민 가운데 시의회 의정활동을 점검하고, 민원 또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·수렴하여 건의하도록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’으로 용어를 정의하고, 안 제4조제1항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한다는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”(이하 “의정모니터”라 한다)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둔 시민 가운데 시의회 의정활동을 점검하고, 민원 또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·수렴하여 건의하도록 서울특별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4조(구성) ① 의정모니터는 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의회 누리집(홈페이지)을 통하여 의견제출이 가능한 사람으로 구성한다.

② 의정모니터는 의장이 의원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한다.

③ 의장은 의정모니터를 위촉할 때 지역별, 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- 입법체계상 정의규정은 해당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규정으로 법령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하나의 조문에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원칙임.
- 그러나 안 제4조제1항에서 의정모니터는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안 제2조의 정의 조항과 중복되고, 의회 누리집(홈페이지)을 통하여 의견 제출이 가능한 사람으로 구성토록 한 사항도 안 제5조제3항에 적시되어 있으므로 안 제4조제1항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임.
- 또한 18세 이상이라는 추가적인 자격요건은 안 제2조의 정의조항에서

규정하는 것이 입법 기술례(記述例)를 감안할 때 보다 타당한 방법이라 판단됨.

- 한편, 일부 조문의 체계자구와 약어 사용 등의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수정·보완할 필요가 있으며, 이 경우 안 제3조의 일부 조문도 병행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제정안	수정의견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<u>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</u>”(이하 “<u>의정모니터</u>”라 한다)란 서울특별시(이하 “<u>시</u>”라 한다)에 <u>주소를 둔 시민 가운데 시의회 의정활동을 점검하고, 민원 또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·수렴하여 건의하도록 서울특별시의회 의장(이하 “<u>의장</u>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<u>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(이하 “의정모니터”라 한다)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‘의회’라 한다) 의정활동을 점검하고, 민원 또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·수렴하여 건의하도록 서울특별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.</u></p>
<p>제3조(역할) 의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안 및 의견 제시</u> 2. 자치법규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건의 3. 시정 주요 시책 및 의정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·건의 4. 시민의 불편사항의 탐색 및 건의 5. 그 밖에 시정 또는 의정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	<p>제3조(역할) 의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의회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안 및 의견 제시</u> 2. 자치법규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건의 3. 시정 주요 시책 및 의정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·건의 4. 시민의 불편사항의 탐색 및 건의 5. 그 밖에 시정 또는 의정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<p>제4조(구성) ① <u>의정모니터는 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의회 누리집(홈페이지)을 통하여 의견제</u></p>	<p>제4조(구성) ① <삭 제></p>

<p>출이 가능한 사람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의정모니터는 의장이 의원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한다.</p> <p>③ 의장은 의정모니터를 위촉할 때 지역별, 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① 의정모니터는 의장이 의원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한다.</p> <p>② 의장은 의정모니터를 위촉할 때 지역별, 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</p>
---	--

4 의정모니터 의견의 접수 및 처리(안 제5조)

- 안 제5조제4항에서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,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시장이나 교육감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, 시장 또는 교육감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제5조(의견의 접수 및 처리) ①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매월 의견을 수렴한 뒤 적절한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의정모니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② 의장은 현안과제를 선정한 뒤 이를 의정모니터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
③ 의정모니터는 의회 누리집(홈페이지)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④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,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나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, 시장 또는 교육감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.

- 이는 의정모니터 제출의견에 대해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면서도 직접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집행부로 이송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

점에서 그 목적과 취지는 타당함.

- 다만, 의정모니터 제출의견의 처리와 결과 통지의무 등 법령상 근거 없이 집행기관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.
-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, 지방의회는 집행기관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·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(대법원 2009.9.24. 선고 2009추53 판결).
- 이와 관련하여 안 제5조제4항은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의정모니터의 의견을 처리토록 할 뿐 특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, 처리결과에 대해 의회에 단순히 통지하도록 할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위법 위배 소지는 없을 것이라 판단됨.
- 참고로, 본 제정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의회, 세종특별자치시의회, 경기도의회, 충청남도의의회 등에서도 안 제5조제4항과 같은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음.

5 종합 의견

- 본 제정안은 의정모니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그 역할과 구성, 의견 접수 및 처리방법, 위촉해제, 활동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나, 정의 조항과 약어 등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·보완할 필요가 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.

6. 심 사 결 과 : 수정 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11명 전원 찬성)

7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 음.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470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6월 23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조례안의 정의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약칭 및 일부 조항의 체계자구를 수정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‘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’의 용어 정의를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을 점검하고, 민원 또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·수렴하여 건의하도록 서울특별시회장의 위촉하는 사람’으로 명확히 정의함(안 제2조 및 제4조제1항 삭제).
- 일부 조항의 체계자구와 약칭 사용 등의 오류가 있는 사항을 수정함(안 제2조부터 제4조).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

○ 기타사항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(이하 “의정모니터” 라 한다)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‘의회’ 라 한다) 의정활동을 점검하고, 민원 또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·수렴하여 건의하도록 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 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안 제3조 제1호 중 “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 라 한다)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 이라 한다)” 을 “의회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 이라 한다)로 한다.

안 제4조 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<u>이 조례에서 “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”(이하 “의정모니터”라 한다)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둔 시민 가운데 시의회 의정활동을 점검하고, 민원 또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·수렴하여 건의하도록 서울특별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.</u></p> <p>제3조(역할) 의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</p> <p>1. <u>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안 및 의견 제시</u></p> <p>2.~4. (생략)</p> <p>제4조(구성) ① <u>의정모니터는 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의회 누리집(홈페이지)을 통하여 의견제출이 가능한 사람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② <u>의정모니터는 의장이 의원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한다.</u></p> <p>③ <u>의장은 의정모니터를 위촉할 때 지역별, 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<u>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(이하 “의정모니터”라 한다)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‘의회’라 한다) 의정활동을 점검하고, 민원 또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·수렴하여 건의하도록 서울특별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.</u></p> <p>제3조(역할) 의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</p> <p>1. <u>의회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안 및 의견 제시</u></p> <p>2.~4.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4조(구성) ① <삭 제></p> <p>① <u>의정모니터는 의장이 의원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한다.</u></p> <p>② <u>의장은 의정모니터를 위촉할 때 지역별, 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

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여론 수렴과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,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(이하 “의정모니터”라 한다)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‘의회’라 한다) 의정활동을 점검하고, 민원 또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·수렴하여 건의하도록 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역할) 의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의회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안 및 의견 제시
2. 자치법규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건의
3. 시정 주요 시책 및 의정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·건의
4. 시민의 불편사항의 탐색 및 건의
5. 그 밖에 시정 또는 의정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(구성) ① 의정모니터는 의장이 의원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한다.

② 의장은 의정모니터를 위촉할 때 지역별, 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의견의 접수 및 처리) ①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매월 의견을 수렴한 뒤 적절한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의정모니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- ② 의장은 현안과제를 선정 한 뒤 이를 의정모니터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- ③ 의정모니터는 의회 누리집(홈페이지)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④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,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나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, 시장 또는 교육감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.

제6조(위촉 해제)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
2. 다른 시·도 등으로 진출하였을 때
3. 타인의 의견 도용 등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
4. 그 밖에 의정모니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
제7조(활동지원)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-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, 의정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의장은 의정모니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위상과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실비보상 등) 의장은 의정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포상) 의장은 활동이 우수한 의정모니터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세칙) 의정모니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